

# 브랜드 관리 규정

제정 2016.11.08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포항공과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와 대학의 내부조직 및 관련 법인을 나타내는 명칭·로고·기타의 표지 등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대학의 브랜드를 보호하고 관리함으로써 대학의 명성과 신용의 유지 및 강화를 도모하고 브랜드 사용료의 분배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보와 대학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학 내부조직” (이하 “내부조직” 이라 한다)이란 대학의 ‘학칙’ 과 ‘직제 규정’ 에서 정한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행정조직, 단위부서, 부속 기관, 부설연구소 등을 말한다.
2. “학교 관련 법인” (이하 “관련 법인” 이라 한다)이란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 (이하 “학교법인” 이라 한다), 포항공과대학교 기술지주주식회사(이하 “기술지주 회사” 라 한다) 등 실질적으로 대학의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3. “외부 기업” 이란 내부조직 및 관련 법인을 제외한 기업, 사업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브랜드” 란 ‘상표법’ 제2조 제1호 상의 표장이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상의 표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다음에 예시된 것 등을 말한다.
  - 가. 대학을 표시하는 명칭·로고·기타의 표지
  - 나. 내부조직을 표시하는 명칭·로고·기타의 표지
  - 다. 관련 법인을 표시하는 명칭·로고·기타의 표지
  - 라.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및 대학의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규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을 표시하는 명칭, 로고, 기타의 표지
5. “도메인이름” 이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정한 것을 말한다.
6. “교직원 등” 이란 대학·관련 법인·부속기관·부설연구소 등에 근무하는 전임 교원, 비전임교원, 겸임교원 등의 모든 교원, 직원, 조교, 연구원,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대학의 업무에 관련된 자신의 직무로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학생, 수료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제2조 제4호의 브랜드, 같은 조 제5호의 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적용되며, 이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관련 법규에 따르고,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정의되지 않는 한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 2 장 브랜드의 보호와 관리

제4조(브랜드의 보호활동) ① 대학 총장(이하 “총장” 이라 한다)은 대학과 그 내부조직 및 관련 법인의 브랜드를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하고, 그 활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권리보호를 위해서 법적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

② 총장은 대학과 내부조직 및 관련 법인에 대한 일체의 브랜드에 관한 기획·관리 업무 및 위 브랜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업무 등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을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단장은 위임된 업무 중 학교법인이 보유한 브랜드에 관한 업무는 학교법인으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한다.

③ 제2항의 업무는 산학협력단 산하의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관리하는 부서가 수행한다.

## 제 3 장 브랜드에 관한 사용허락 및 취소

제5조(사용허락의 신청절차) ① 대학, 내부조직 및 관련 법인의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외부 기업은 단장에게 서면으로 그 사용허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단장의 승인을 받아 전자우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학, 내부조직 및 관련 법인이 제3자에게 브랜드를 사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장에게 그 제3자에 대한 사용허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락의 결정기준) ① 모든 영리적 목적 및 외부 기업이 상호의 일부로 브랜드를 사용코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 허락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다만, 아래의 각호에 한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용 허락할 수 있다.

1. 기술지주회사가 경영권을 보유한 자회사의 상호의 일부로 사용
2. 대학이 연구 개발 또는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별도로 설립한 기구에 참여하거나 상기 목적을 위해 설립한 공간에 입주하는 기업의 입주 센터의 명칭의 일부로 사용
3. 대학과 공동연구개발 결과물 또는 대학의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 해당 사실을

표시할 때 사용

- 4. 대학이 자체적 또는 위탁을 통해 제작하는 홍보용 기념품 제작 시 사용
- 5. 브랜드 사용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제2항에 의해 사용 허락할 경우 브랜드 사용 형태 또는 방식은 아래와 같이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일부 변경할 수 있다.

- 1. ‘(상대 기업의 상호 또는 상대 기업이 지정한 이름)+포항공과대학교’ 또는 ‘(상대 기업의 상호 또는 상대 기업이 지정한 이름)+포스텍 또는 (상대 기업의 상호 또는 상대 기업이 지정한 이름)+POSTECH’
- 2. ‘(상대 기업의 상호 또는 상대 기업이 지정한 이름)+포항공과대학교센터’ 또는 ‘(상대 기업의 상호 또는 상대 기업이 지정한 이름)+포스텍센터’ 또는 ‘(상대 기업의 상호 또는 상대 기업이 지정한 이름)+POSTECH센터’
- 3. ‘포항공과대학교(또는 포스텍 또는 POSTECH)와의 공동연구결과물 또는 포항공과대학교(또는 포스텍 또는 POSTECH)으로부터 기술이전받아 생산된...’
- 4. 심볼마크, 엠블럼, 개교특별엠블럼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대학에서 정한 형태, 색상 등에 대해 일체의 변경 및 변형 금지

④ 단장은 브랜드의 사용허락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1. 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
- 2. 대학, 내부조직의 상표 사용 대상 상품, 활동, 간행물과의 관계가 대학의 교육 목적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
- 3. 대학 교직원 등의 연구성과물임을 표시한 경우에 그 표시가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는지 또는 그러한 표시로 인하여 수요자의 혼동을 초래하는지의 여부

제7조(사용허락의 결정) ① 브랜드의 사용허락에 관한 사항은 제6조 제2항 제5호를 제외하고는 단장이 결정한다.

② 제6조 제2항 제5호의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 산학처장, 학교법인 본부장으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사용 허락한다.

제8조(사용허락의 절차 및 계약) ① 단장은 외부 기업에게 브랜드 사용을 허락한 경우 해당 기업과 브랜드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최초 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으로 한다. 다만 단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가감할 수 있다.

③ 위 계약은 갱신할 수 있다.

④ 브랜드사용 계약 업무는 기술지주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락의 취소) ① 단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사용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 1. 사용자가 제6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상표를 사용 하는 경우

2. 사용자가 브랜드를 사용함에 있어 계약에서 정해진 바와 다르게 사용한 경우에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현저한 개선사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용자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 지급불능, 채무초과, 파산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 폐업, 휴업 등으로 재산의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락을 취소한 때부터 3년 이내에는 재 사용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이미 징수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③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소멸 즉시 사용허락을 취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2년 내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 제 4 장   브랜드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 제10조(브랜드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① 단장은 제6조에 따라 브랜드를 제3자에게 사용 허락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상대방과의 협의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징수 금액 중 50%는 브랜드 관리 등의 지식재산권 관리 비용으로 사용하며 나머지 50%는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 5 장   기   타

- 제11조(브랜드의 무단사용에 대한 처리) 단장은 대학, 내부조직 및 관련 법인의 상표가 무단으로 사용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부   칙

1. (시행시기) 이 규정은 2016년 11월 8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부터 포항공과대학교의 브랜드를 사용 중인 외부 기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되, 종전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브랜드 사용권을 유지하되 기타 조건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재협의한다.